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2387
------	------

2025.03.04.
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02월 03일, 이민옥 의원(찬성자 28명)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02월 06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】

-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(2025.03.04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이민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·감독이 어려운 실정임.
- 특히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어,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.

- 이에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 서울시가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,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제1항)
2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2항)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개정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출자·출연기관별로 상이한 윤리경영 체계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.

2. 서울시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규정 추가

- 정부는 일부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을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과 2018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‘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’ 등이 제기됨에 따라 1,205개 공공기관¹⁾에 대하여 ‘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’를 실시(2018.11.06.~2019.01.31.)하고,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였음²⁾.
- 이와 함께 정부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공공기관 관련 법률에 인사채용비리, 성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비위자에 대한 수사·감사 조치와 윤리경영 강화 노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,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편람에 윤리경영 관련 지표를 신설한 바 있음.

< 윤리경영 관련 관계 법률 내용 >

구 분	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	지방공기업법	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관련내용	제48조제4항 - 경영실적보고서 등의	제63조의7제1항 및 제2항 -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	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 -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

1) 정부공공기관 333개, 지방공공기관 634개, 기타 공직유관단체 238개

2) 수사의뢰 : 36건, 징계·문책요구 : 146건

	<p>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·재출할 경우 또는 불공정한 인사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경영실적평가 결과 및 성과급 수정, 주의·경고조치 및 관계자 인사상 조치 요구, 불이행시 책임자 해임 및 해임건의</p> <p>제50조제2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정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경영지침에 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 가능 <p>제52조의3제1항 및 제2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노력 의무 -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 	<p>노력 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단체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 <p>제78조제6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주의·경고 조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기업의 평가급 조정 요청하도록 함. 	<p>경영 노력 의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치단체장에게 윤리경영을 저해한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수사 및 감사의뢰권한 및 직무정지권한 부여
--	--	--	---

- 그러나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6개 공기업 및 16개 출연기관의 개별 근거 조례나 출자·출연기관에 관한 기본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는 윤리경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태임.
- 또한 각 기관별 성비위 등의 중대한 윤리경영 저해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정수와 구성, 심의절차 등이 상이하고, 공통된 표준교안이 없이 개별 기관별로 윤리경영 관련 교육이 이루어짐에 따라 교육의 형식화가 우려되는 상황임.
-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장으로 하여금 윤리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하고,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

보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입법 취지와 그 내용에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

(재석의원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민옥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38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민옥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 경, 김성준, 김원태,
남창진, 박수빈, 박승진,
박영한, 박유진, 박칠성,
봉양순, 서상열, 송재혁,
신복자, 왕정순, 유만희,
유정희, 이병도, 이상훈,
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임종국, 정준호,
최민규, 한 신, 홍국표,
황유정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산하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통일된 기준에 따른 관리·감독이 어려운 실정임
- 특히 성희롱·성폭력 등 중대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심의기구 구성에 있어 기관별 차이가 있어,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
- 이에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,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
- 또한 서울시가 출자·출연기관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, 기관별 편차 없이 통일된 윤리경영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11조의2제1항)

나. 시장이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윤리경영 지원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의2(윤리경영 지원) ①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의 윤리경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시장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의2(윤리경영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감사위원회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11조의2	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(붙임1)	60,3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5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사업설명서

□ 사업목적

-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활동 강화 및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
-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및 윤리경영 지원을 통해 투자출연기관 부조리 사전예방 기능 강화

□ 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조
-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
-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1월 ~ 2025.12월
- 2025년도 총 사업비 : 60,300천원
- 주요 사업내용
 -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, 특정감사 등 감사 실시
 - 서울시·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: 우수감사사례 공유 및 비위 발생 방지 대책 강구 등
 -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및 상임감사 평가
 - 투자출연기관 실무자 대상 워크숍 개최
 -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